

안전전문센터 운영규정

제정 : 2018. 8. 14

제1조(목 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(이하 ‘안실련’) 정관 제33조에 규정된 분야별 안전전문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 무) 센터는 안실련 제3조에 규정된 사업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

- ① 교통, 자살, 재난, 화재, 시설, 산업안전보건 등 주요 재난안전 분야 관련법령과 제도개선 정책 건의
- ② 안실련 정관 제3조 제1호에서 제 10호와 관련된 분야별 안전전문 기능에 대한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- ③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(조직 및 구성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안실련 공동대표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에는 부센터장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센터장의 추천으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안전정책연구소장, 이사 1인, 센터장, 업무소관 본부장 또는 실장, 부센터장을 위원으로 하고 안전정책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과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분야별(교통, 자살, 재난, 화재, 시설, 산업안전보건) 안전 현안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운영예산 편성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다음 항목과 같고 예·결산은 안실련 사무처를 통해 처리한다.

- ① 센터활동 및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
- ② 센터 구성원의 활동이나 외부수탁으로 인한 예산

제6조(운영세칙)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(부 칙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